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칠승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987

발의연월일 : 2022. 6. 16.

발 의 자: 권칠승·이원택·김민철

김철민 · 이용우 · 박광온

도종화 · 김태년 · 김회재

김의겸 · 김정호 · 소병훈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 실현의 기초이자 국회의 책무임.

이에 현행법에 명시된 이업종교류를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로 용어를 정비하여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함(안 제5조등).

법률 제 호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의 제목 "(이업종교류지원사업)"을 "(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사업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이업종교류지원사업(異業種交流支援事業)"을 "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사업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이업종교류지원사업"을 "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"으로 한다.

제67조제1항제8호 중 "이업종"을 "서로 다른 업종 간"으로 한다. 제74조제1항제3호 중 "이업종교류"를 "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"로 한 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이업종교류지원사업) ① 중	제5조(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
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로 다른	사업) ①
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	
업자간 정보 및 기술 교류를	
촉진하기 위하여 <u>이업종교류지</u>	<u>k</u>
원사업(異業種交流支援事業)을	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사업
실시하여야 한다.	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	2
항에 따른 <u>이업종교류지원사업</u>	<u>서로 다른 업종 간 교</u>
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	류 지원사업
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67조(기금의 사용 등) ① 기금	제67조(기금의 사용 등) ①
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	
여 사용할 수 있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8. 중소기업·벤처기업에 대한	8
기술개발 및 <u>이업종</u> 교류의	<u>서로 다른 업종</u>
지원	간
9. ~ 24. (생 략)	9. ~ 2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4조(사업) ① 중소벤처기업진	제74조(사업) ①
흥공단은 중소기업에 관한 다	

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기술개발의 지원 및 <u>이업종</u> 교류의 지원
- 4. ~ 23. (생략)
- ②·③ (생 략)

--.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-----<u>서로 다</u> 른 업종 간 교류-----
- 4. ~ 23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